

세람택스
세무서비스 이용 동의서

S
E
R
V
I
C
E
S

세라텍스 서비스 가입신청서

1. 필수기재사항

사업자 정보	회사명	주식회사 베리 임팩트	
	연락처	010-9985-5197	
	이메일	st@betterimpact.co.kr	
	전자세금계산서용 이메일	/ /	
결제 정보	CMS	예금주명	(주) 베리 임팩트
		은행명	우리은행
		계좌번호	1005-203-888886

2. 상세정보

상세 정보	前세무사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	(상호)	(연락처)	
	홈택스	(ID)	(PW)		
	법인카드/사업자카드	()매 / ()매			
	인건비	4대보험	()명		
		프리랜서	()명		
		일용직	()명		
	임차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(금액)	(부가세)	
	초기비용	인테리어		차입금	
		권리금		기계장치	
	기초자료수령확인	공통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증 <input type="checkbox"/> 신분증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임대차계약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용카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용통장		
개인		<input type="checkbox"/> 등기부등본 <input type="checkbox"/> 정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주명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감사진			
타 소득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			

기타 사항

1. 개인사업장 1. > 관리 필요
주택 임대 1.

2. 등기변경 ^ 확인
정관 및 주소 등 대표자 지분 추가

3. 지원금 신청 확인 필수

기타 정보

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

1. 법인 설립 시 증명받은 자본금은 새로 개설하신 법인 통장으로 꼭 입금해주세요!
2. 법인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(생활비 목적, 단기 자금 운용 등)하실 때는 적격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!
법인세법 시행령 88조, 89조에 의거 법인 설립 후 입금되지 않은 자본금 및 대표이사 임의로 인출한 자금은 추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3. 등기사항(상호, 본점, 임원에 관한 사항, 자본금, 사업목적 추가 등)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소에 신고해야 하며, 변경 내용을 세무사 또는 담당 매니저님께 꼭 전달해주셔야 합니다! 등기 해태(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을 경우)에 상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4. 사업 초기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꼭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무보수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이 성장하고 현금흐름이 원활한 시점에 급여를 책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!
5. 기업부설연구소, 정부지원금(일자리안정자금, 두루누리지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), 퇴직금재원마련, 합법적 증여 등 절세방안 컨설팅은 담당 세무사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!
6. 법인의 세금신고

	1기 예정 (1.1~3.31)	1기 확정 (4.1~6.30)	2기 예정 (7.1~9.30)	2기 확정 (10.1~12.31)
부가가치세 신고기한	4월 25일	7월 25일	10월 25일	1월 25일
법인세 신고기한	법인의 사업연도(1월 1일 ~ 12월 31일) 3월 31일			

참고 세무자료

세율

1. 법인세율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2억원 이하	10%	-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0%	2,000만원
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22%	39억 8,000만원
3,000억원 초과	25%	656억원

2. 소득세율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	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5%	108만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4%	522만원
8,800만원 초과 1억5,000만원 이하	35%	1,490만원
1억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8%	1,940만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0%	2,540만원
5억원 초과	42%	3,540만원

3. 상속 및 증여세율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1억원 이하	10%	-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20%	1,000만원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30%	9,000만원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40%	2억 4천만원
30억원 초과	50%	10억 4천만원

4대사회보험 요율

구분	기준소득월액	
	근로자부담분	사업자부담분
국민연금	4.5%	4.5%
건강보험	3.335%	3.335%
장기요양보험	0.3418357%	0.3418357%
고용보험	0.8%	0.105%
산재보험	업종별 상이	

세무대리 계약서

세무대리 계약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.

위임인 (갑)

회 사 명
대 표 자
주 소

위 당사자는 수임인(을) 세람텍스(정승영)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조 (업무)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고, 을은 이를 수임한다.

제 2조 (기간)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하고, 기간 만료 후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본 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3조 (보수) ①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월정금 150,000원(vat 별도)로 한다.

일반 및 법인 사업자 기장 보수표

과세기간 매출	개인 기장료	법인 기장료	비고
2억원 미만	100,000	150,000	
2억원 ~ 4억원 미만	100,000	180,000	
4억원 ~ 6억원 미만	120,000	210,000	- 경정청구 : 환급세액의 35%
6억원 ~ 8억원 미만	140,000	240,000	- 특정업종 및 성실신고 사업자, 정부지원금 적용,
8억원 ~ 10억원 미만	160,000	270,000	소급/수정신고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.
10억원 ~ 15억원 미만	210,000	320,000	
15억원 ~ 20억원 미만	260,000	370,000	
20억원 ~ 30억원 미만	330,000	440,000	
30억원 ~ 50억원 미만	450,000	560,000	
50억원 ~ 100억원 미만	700,000	810,000	
100억원 이상시	별도 안내(지면 여건 생략)		

②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, 신고대리,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 등에 따른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갑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의 기장대리보수와는 별도로 법인세(종합소득세)신고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비용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며, 그 시기는 법인세(종합소득세) 신고시점으로 한다.(VAT별도)

④ 병의원, 건설, 제조, 수출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 보수가 가산되어 청구된다.

일반 및 법인 사업자 기장 보수표

과세기간 매출	개인 조정료	법인 조정료
5천만원 미만	350,000	500,000
5천만원 ~ 1억원 미만	350,000+5천만원초과액의 0.2%	500,000+1억원초과액의 0.18%
1억원 ~ 3억원 미만	450,000+1억원 초과액의 0.15%	860,000+3억원초과액의 0.15%
3억원 ~ 5억원 미만	750,000+3억원초과액의 0.12%	1,160,000+5억원초과액의 0.12%
5억원 ~ 10억원 미만	990,000+5억원초과액의 0.10%	1,760,000+10억원초과액의 0.10%
10억원 ~ 15억원 미만	1,490,000+10억원초과액의0.08%	2,260,000+15억원초과액의 0.08%
15억원 ~ 20억원 미만	1,890,000+15억원초과액의0.07%	2,660,000+20억원초과액의 0.05%
20억원 ~ 30억원 미만	2,240,000+20억원초과액의0.05%	3,160,000+30억원초과액의 0.03%
30억원 ~ 50억원 미만	2,740,000+30억원초과액의0.03%	3,760,000+50억원초과액의 0.025%
50억원 ~ 100억원 미만	3,340,000+50억원초과액의0.025%	
100억원 이상시	별도 안내(지면 여건 생략)	

*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선임보수가 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▶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, 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위임인(갑)

회 사 명 : 주식회사 베리임팩트
대 표 자 : 김성태

(서명 또는 인)

수임인(을)

회 사 명 : 세무그룹 세람텍스
대 표 자 : 정승영

(서명 또는 인)

⑤ 갑은 연말 정산 시 대상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당 15,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.

제 4 조 (보수의 지급방법) ① 본 계약에 대한 기장료는 20년 10월분부터 지급하기로 한다.

② 보수지급은 매월 5일까지 지급한다.

제 5 조 (보수지급의 지체)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,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 및 사임할 수 있으며,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의무) 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,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 기준 및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비밀업수) 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업무수행능력 및 책임) ①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이러한 경우에도 월정액을 지불하여야 한다.

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갑이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요구자료의 지연제시 또는 미제출로 인해서 장래 갑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.

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, 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9 조 (계약해지) ① 제2조의 기간 만료 후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을은 해지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여 관계 서류 일체를 갑에게 인계하고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켜야 한다.

② 제3조에 정한 보수의 지급이 3개월 이상 연체 되는 경우 을은 전항의 사전 통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서면통지 하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갑은 관계서류 일체를 인수하기 전에 연체된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 이후에 업무의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처리와 관계서류의 보관의무 등에 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④ 갑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 불비 및 허위인 때에는,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으며, 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다.

제 10 조 (분쟁의 해결)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.

제 11 조 (관할의 합의)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 12 조 (기타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